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담금 경감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부담금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납부기간 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17조)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과밀부담금 부과 원인마다 반복하여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 부과방법 개선(안 제23조)

1)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만큼 이전 소유자와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나, 신청기간(10일)을 초과하면 현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되고 있어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이 명목상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특성으로 부담금 납부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를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와 동일하게 위탁자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시설물 소유자 정보 확인 근거 규정(안 제25조)

- 1)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부과관청이 소유자 정보 및 시설물의 주거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부과관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분할납부 신청기간 연장(안 제26조)

부담금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부담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은 1개월 정도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 및 납부기한이 짧아 이를 각각 5일에서 16일,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마. 부담금 경감률 확대 등(안 별표 4)

정부가 구축·운영 중인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민간 건축물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경감프로그램 이행 시 부담금 경감률

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사전검토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관련 정보 제출에 대해 규제심사 ‘대상’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되, 같은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이 조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위탁자에게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정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탁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고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였음에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는 “부담금”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 후 5일 이내에”를 “내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이행조건란 및 부담금 경감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배 이상 3배 미만 부과	5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별표 4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30일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⑥ 시장은 위탁자에게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청할

<신설>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정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탁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고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였음에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는 “부담금”으로 본다.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 ----- ----- ----- ----- ----- --. 이 경우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분할 납부) ① (생략)	제26조(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u>시작 후 5일 이내에</u>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 <u>내에</u> ----- -----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2